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2. 장정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3. 3. 24.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3. 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장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적용 범위 확대하여 제명 개정
- 2)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조례안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 안 제1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 안 제2조 제1호 중 ““장년(長年)층”이란 50세”를 ““중·장년(中·長年)층”이란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 안 제3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 안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 안 제5조에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 안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구민의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 중·장년층의 실태조사와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 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